

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5. 9. 18.

도시환경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안건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발의자: 강한곤 의원 등 6명(김정희, 정순옥, 고명옥, 김장관, 장호섭)
- 발의일자: 2025. 9. 3.(수)
- 회부일자: 2025. 9. 3.(수)
- 상정 및 의결: 제31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(2025. 9. 18.)

2. 제안이유

- 어린이와 유모차 동반 주민 등 다양한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어린이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출입구와 보행자길 등을 정비하여 편의와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어린이공원은 어린이 또는 유모차를 동반한 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출입구와 보행자길 등 관련 시설을 정비하도록 함(안 제3조제3항제4호 신설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제2항
 -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9조제3항

- 비용추계: 비대상
- 입법예고(2025. 9. 3.~9. 15.): 의견없음

5. 전문위원 검토의견(전문위원 최윤미)

-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어린이와 유모차 동반 주민이 어린이공원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출입구와 보행자길 등 관련 시설을 정비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원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9조제3항에서 규정한 어린이의 이용 편의 보장 취지와 부합되며 어린이 및 보호자의 공원 이용 안전을 제도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주민의 안전한 휴식 공간 확보와 아동·가족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, 관련법령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6. 질의·답변 및 토론 요약: 특이사항 없음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